「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제 3 편제 1 장제 1 절－제 2 절)」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6<1951>년 법률 제198호
- 공 포 일: 1951년 6월 4일
- 개 정 일: 2019년 6월 14일

원문	번역문
第三編 投資法人制度 第一章 投資法人 第一節 通則	제3편 투자법인제도 제1장 투자법인 제1절 통칙
第六十一条（法人格） 投資法人は、法人とする。	제61조(법인격) 투자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第六十二条（住所） 投資法人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る。	제62조(주소) 투자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第六十三条（能力の制限） 投資法人は、資産の運用以外の行為を営業として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63조(능력의 제한) ① 투자법인은 자산의 운용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

2　投資法人は、本店以外の営業所を設け、又は使用人を雇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투자법인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사용인을 고용하지 못한다.
第六十三条の二（商行為等） 投資法人がその事業としてする行為及びその事業のためにする行為は、商行為とする。 2　商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第十一条から第十五条まで及び第十九条の規定は、投資法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63조의2**(상행위 등) ① 투자법인이 사업으로 하는 행위 및 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한다. ② 「상법」(명치32<1899>년 법률 제4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는 투자법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六十四条（商号等） 投資法人は、その名称を商号とする。 2　投資法人は、その商号中に投資法人という文字を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3　投資法人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投資法人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4　何人も、不正の目的をもつて、他の投資法人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名称又は商号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5　前項の規定に違反する名称又は商号の使用によつ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投資法人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	**제64조**(상호 등) ① 투자법인은 그 명칭을 상호로 한다. ② 투자법인은 상호에 투자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투자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투자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투자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명칭 또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투자법인은 그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

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6　自己の商号を使用して事業又は営業を行うことを他人に許諾した投資法人は、当該投資法人が当該事業を行うものと誤認して当該他人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当該他人と連帯して、当該取引によつ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의 정지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투자법인은 해당 투자법인의 사업으로 오인하여 타인과 거래한 자에게 해당 타인과 연대하여 해당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第六十五条（会社法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の読替え等） この編（第百八十六条の二第四項を除く。）及び第五編の規定において会社法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同法の規定中「電磁的記録」とあるのは「電磁的記録（投資法人法第六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電磁的記録をいう。）」と、「電磁的方法」とあるのは「電磁的方法（投資法人法第七十一条第五項に規定する電磁的方法をいう。）」と、「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株式会社」とあるのは「投資法人」と、「株式」とあるのは「投資口」と、「株主」とあるのは「投資主」と、「定款」とあるのは「規約」と、「発起人」とあるのは「設立	**제65조**(회사법을 준용하는 경우의 대체 등) ① 이 편(제186조의2제4항을 제외한다) 및 제5편에서 회사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電磁的) 기록”은 “전자적 기록(「투자법인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로, “전자적 방법”은 “전자적 방법(「투자법인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로, “법무성령”은 “내각부령”으로, “주식회사”는 “투자법인”으로, “주식”은 “투자구(投資口)[1]”로, “주주”는 “투자주”로, “정관”은 “규약”으로, “발기인”은 “설립기획인”으로, “주권”은 “투자증권”으로, “신주예약권”은 “신투자구예약권”으로, “신주예약권증권”은 “신투자구

[1] Investment Equity, 투자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한 것. 주식회사의 주식에 해당함

企画人」と、「株券」とあるのは「投資証券」と、「新株予約権」とあるのは「新投資口予約権」と、「新株予約権証券」とあるのは「新投資口予約権証券」と、「新株予約権者」とあるのは「新投資口予約権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예약권증권"으로, "신주예약권자"는 "신투자구예약권자"로 한다.
2 この編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編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られた会社法及び商業登記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二十五号）の規定中「投資法人法」とあるのは、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をいうものとする。	② 이 편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대체된 「회사법」 및 「상업등기법」(소화 38<1963>년 법률 제125호) 중 "투자법인법"은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第二節 設立	**제2절 설립**
第六十六条（設立企画人による規約の作成等） 投資法人を設立するには、設立企画人が規約を作成し、その全員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6조**(설립기획인에 의한 규약의 작성 등) ①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기획인이 규약을 작성하고 그 전원이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前項の規約は、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もつ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情報については、内閣	② 제1항의 규약은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는 내각부령

府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設立企画人（設立企画人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そのうち少なくとも一人）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設立しようとする投資法人が主として投資の対象とする特定資産と同種の資産を運用の対象とする金融商品取引業者（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金融商品取引業者） イ 当該特定資産に不動産が含まれる場合 宅地建物取引業法第三条第一項の免許及び同法第五十条の二第一項の認可を受けている金融商品取引業者 ロ 当該特定資産に有価証券及び不動産以外の政令で定める資産が含まれる場合 政令で定める金融商品取引業者 二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他人の資産の運用に係る事務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知識及び経験を有する者と	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획인(설립기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설립하려는 투자법인이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특정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다음의 가[2] 또는 나의 경우에는 각각에서 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가. 해당 특정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조제1항의 면허 및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상품거래업자 나. 해당 특정자산에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타인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 및 경험을

[2] 일본의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순히 “가/나/다…” 또는 “제○호의가/나/다…”와 같이 번역함

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가진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 第九十八条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者は、設立企画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④ 제9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설립기획인이 되지 못한다.
第六十七条（規約の記載又は記録事項等） 投資法人の規約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7조**(규약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등) ① 투자법인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一 目的	1. 목적
二 商号	2. 상호
三 投資主の請求により投資口の払戻しをする旨又はしない旨	3. 투자주의 청구에 따라 투자구를 환불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四 投資法人が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投資口の総口数（以下「発行可能投資口総口数」という。）	4. 투자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투자구의 총구수(総口数)(이하 "발행가능투자구총구수"라한다)
五 設立に際して出資される金銭の額	5. 설립 시에 출자되는 금액
六 投資法人が常時保持する最低限度の純資産額	6. 투자법인이 상시 보유하는 최저한도의 순자산액
七 資産運用の対象及び方針	7. 자산운용의 대상 및 방침
八 資産評価の方法、基準及び基準日	8. 자산평가방법, 기준 및 기준일
九 金銭の分配の方針	9. 금전 분배 방침
十 決算期	10. 결산기
十一 本店の所在地	11. 본점 소재지
十二 執行役員、監督役員及び会計監査人の報酬の額又は報酬の支払に関する基準	12. 집행임원, 감독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보수액 또는 보수 지급에 관한 기준

十三　資産運用会社に対する資産運用報酬の額又は資産運用報酬の支払に関する基準	13.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보수액 또는 자산운용보수 지급에 관한 기준
十四　成立時の一般事務受託者、資産運用会社及び資産保管会社となるべき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これらの者と締結すべき契約の概要	14. 성립시의 일반사무수탁자,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되어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이들과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의 개요
十五　借入金及び投資法人債発行の限度額	15. 차입금 및 투자법인채발행의 한도액
十六　設立企画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16. 설립기획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十七　投資法人の成立により設立企画人が受ける報酬その他の特別の利益の有無並びに特別の利益があるときはその設立企画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金額	17. 투자법인의 성립으로 설립기획인이 받는 보수, 그 밖의 특별 이익의 유무, 특별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설립기획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금액
十八　投資法人の負担する設立に関する費用の有無並びにその費用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及び金額	18. 투자법인이 부담하는 설립에 관한 비용의 유무, 그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금액
2　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投資主の請求により投資口の払戻しをする旨を定めるときは、一定の場合においては払戻しを停止する旨を併せ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주의 청구에 따라 투자구를 환불한다고 정하는 때에 일정한 경우에는 환불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아울러 정할 수 있다.
3　第一項第五号の額は、その上限及び下限を画する方法により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③ 제1항제5호의 액수는 상한 및 하한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4　第一項第六号の最低限度の純資産額（以下「最低純資産額」という。）は、五千万円以上で政令で定める額を下回ることができない。 5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細目は、内閣府令で定める。 6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投資法人の規約に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規約の定め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事項及びその他の事項で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ないもの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7　会社法第三十一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規約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本店及び支店」とあるのは「本店」と、同条第三項中「裁判所」とあるのは「内閣総理大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④ 제1항제6호의 최저한도의 순자산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은 5,000만엔 이상,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세목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투자법인의 규약에는 이 법에 따라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으로서 이 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⑦ 「회사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규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은 “본점”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소”는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六十八条（成立時の出資総額） 投資法人の成立時の出資総額は、設立時発行投資口（投資法人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投資口をいう。以下同じ。）の払込金額（設立時発行投資口一口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をいう。）の総額とする。	**제68조**(성립시 출자총액) ① 투자법인의 성립시 출자총액은 설립시 발행투자구(투자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투자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금액(설립시 발행투자구 1구당 금액을 말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2　前項の出資総額は、一億円以上で政令で定める額を下回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제1항의 출자총액은 1억엔 이상,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第六十九条（設立に係る届出等） 設立企画人は、投資法人を設立しようとす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並びに設立時執行役員（投資法人の設立に際して執行役員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の候補者の氏名及び住所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規約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規約が電磁的記録で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書面に代えて電磁的記録（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添付することができる。 4　設立企画人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後でなければ、第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設立時発行投資口の引受けの申込みの勧誘その他設立時発行投資口を自ら引き受け、又は他人に引き受けさせるため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5　規約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受理され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제69조**(설립과 관련된 신고 등) ① 설립기획인은 투자법인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내용, 설립시 집행임원(투자법인의 설립 시에 집행임원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규약,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규약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설립기획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만 제7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설립시 발행투자구의 인수 신청 권유, 그 밖에 설립시 발행투자구를 직접 인수하거나 타인에게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규약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受理された規約は、投資法人の成立前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7　会社法第九十六条及び第九十七条の規定は、規約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九十六条中「第三十条第二項」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六十九条第六項」と、同法第九十七条中「第二十八条各号」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十七号又は第十八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규약은 투자법인의 성립 전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 「회사법」 제96조 및 제97조는 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 제96조 중 “제30조제2항”은 “「투자법인법」 제69조제6항”으로, 같은 법 제97조 중 “제28조 각 호”는 “「투자법인법」 제67조제1항제17호 또는 제18호”로 하는 것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十条（設立企画人の義務） 設立企画人は、法令及び規約を遵守し、その設立しようとする投資法人のため忠実にその職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設立企画人は、法令及び規約を遵守し、その設立しようとする投資法人に対し、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つてその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70조**(설립기획인의 의무) ① 설립기획인은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설립하려는 투자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획인은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설립하려는 투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七十条の二（設立時募集投資口に関する事項の決定） 設立企画人は、設立時発行投資口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設立時募集投資口（当該募集に応じて設立時発行投資口の引受け	**제70조의2**(설립시 모집투자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설립기획인은 설립시 발행투자구를 인수하는 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그 때마다 설립시 설립시 모집투자구(해당 모집에 따라 설립시 발행투자구의 인수

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設立時発行投資口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設立時募集投資口の口数 二　設立時募集投資口の払込金額（設立時募集投資口一口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をいう。） 三　設立時募集投資口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の期日又はその期間 ２　設立企画人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一項の募集の条件は、当該募集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신청을 한 자에게 할당하는 설립시 발행투자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주식수 2.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납부금액(설립시 모집투자구 1구당 납부금액을 말한다) 3. 설립시 모집투자구와 교환하는 금전의 납부일 또는 그 기간 ② 설립기획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려는 때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모집 조건은 해당 모집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第七十一条（設立時募集投資口の申込み等） 設立企画人は、前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六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年月日 二　第六十七条第一項各号及び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三　投資法人の存続期間又は解	**제71조**(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신청 등) ① 설립기획인은 제70조의2제1항의 모집에 따라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 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연월일 2. 제67조제1항 각호 및 제7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 3. 투자법인의 존속기간 또는

散の事由についての規約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해산의 사유에 대한 규약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四 設立時募集投資口の割当方法	4.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할당방법
五 払込取扱機関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	5. 납부처리기관의 납부 처리장소
六 設立時執行役員、設立時監督役員（投資法人の設立に際して監督役員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投資法人の設立に際して会計監査人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の候補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設立時執行役員の候補者と設立企画人との利害関係の有無及び利害関係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6. 설립시 집행임원, 설립시 감독임원(투자법인의 설립 시에 감독임원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설립시 회계감사인(투자법인의 설립 시에 회계감사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설립시 집행임원 후보자와 설립기획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및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七 第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の額を満たす応募がないときは、設立を取りやめること。	7. 제67조제1항제5호의 액수를 충족하는 응모가 없는 때에는 설립을 취소할 것
八 一定の時期までに投資法人の設立の登記がされない場合又は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ない場合において、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8. 일정 기간까지 투자법인의 설립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을 것
九 第百十五条の六第七項の規定による執行役員、監督役員又は会計監査人の責任の免除についての規約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9. 제115조의6제7항에 따른 집행임원, 감독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의 책임 면제에 대한 규약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十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第五号の払込取扱機関は、銀行等（銀行、信託会社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第八十八条の十七第一項において同じ。）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の細目は、内閣府令で定める。 4　前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設立企画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引き受けようとする設立時募集投資口の口数 5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企画人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第百八十六条の二第一項第三号を除き、以下同じ。）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前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납부처리기관은 은행 등(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8조의17제1항에서 같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의 세목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70조의2제1항의 모집에 따라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설립기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인수하려는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수 ⑤ 제4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기획인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86조의2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을 한 자는 제4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６　設立企画人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つた事項を第四項の申込みをした者（次項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설립기획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제4항의 신청을 한 자(제7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７　設立企画人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四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設立企画人に通知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⑦ 설립기획인이 신청인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4항제1호의 주소(해당 신청인이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는 장소 또는 연락처를 설립기획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부하면 충분하다.
８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つ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⑧ 제7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통지 또는 최고가 통상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９　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に係る払込みは、金銭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⑨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와 관련된 납부는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１０　会社法第六十条、第六十二条（第二号を除く。）及び第六十三条の規定は設立時募集投資口について、同法第六十四条の規定は第二項に規定する銀行等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六十条第一項中「前条第三項第二号」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一条第四項第二号」と、同条第二項及び同法第六十三条第	⑩ 「회사법」 제60조, 제62조(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63조는 설립시 모집투자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는 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3항제2호”는 “「투자법인법」 제71조제4항제2호”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 중 “제58조제1항제3호”는 “「투자

一項中「第五十八条第一項第三号」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条の二第一項第三号」と、同法第六十四条第一項中「第五十七条第一項」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条の二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법인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은 "「투자법인법」 제70조의2제1항"으로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十二条（設立時執行役員等の選任）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知された設立時執行役員、設立時監督役員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の候補者は、設立時発行投資口の割当てが終了した時に、それぞれ設立時執行役員、設立時監督役員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に選任されたものとみなす。	**제72조**(설립시 집행임원 등의 선임) 제71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설립시 집행임원, 설립시 감독임원 및 설립시 회계감사인 후보자는 설립시 투자구의 배당이 종료된 때에 각각 설립시 집행임원, 설립시 감독임원 및 설립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第七十三条（設立時執行役員等による調査等） 設立時執行役員及び設立時監督役員は、投資法人の設立について、第七十条の二第一項第三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の末日のうち最も遅い日以後、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の額を満たす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があつたこと。 二 第七十一条第十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六十三条第	**제73조**(설립시 집행임원 등에 의한 조사 등) ① 설립시 집행임원 및 설립시 감독임원은 투자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일 또는 같은 호의 기간의 말일 중 가장 늦은 날 이후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의 액수를 충족하는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가 있었던 사실 2. 제71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3조제1항

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が完了している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投資法人の設立の手続について法令又は規約に違反する事項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がないこと。	에 따른 납부가 완료된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투자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는 사항,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부존재
2 設立時執行役員は、前項の規定による調査により同項各号のいずれかの事項について欠けるところが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設立企画人にその旨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설립시 집행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기획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設立企画人は、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場合には、設立時投資主（第七十五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百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投資法人の投資主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の総会（以下「創立総会」という。）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설립기획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시 투자주(제7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투자법인의 투자주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4 第九十条の二及び第九十一条の規定は設立企画人が創立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ついて、会社法第六十八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第七十二条第一項本文、第七十三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七十四条から第八十三条まで並びに第九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投資法人の創立総会について、同法第八百三十条、第八百三十一条、第八百三十	④ 90조의2 및 제91조는 설립기획인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대하여, 「회사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 및 제4항, 제74조부터 제83조까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은 투자법인의 창립총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0조, 제831조, 제834조(제16호 및 제17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

四条（第十六号及び第十七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八百三十五条第一項、第八百三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八百三十七条、第八百三十八条、第八百四十六条並びに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ト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投資法人の創立総会の決議の不存在若しくは無効の確認又は取消しの訴え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九十一条第一項中「二月前までに当該日を公告し、当該日の二週間」とあるのは「二週間」と、同法第六十八条第五項中「第二十七条第五号又は第五十九条第三項第一号」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十六号又は第七十一条第四項第一号」と、同条第七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三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投資法人法第九十一条第一項」と、同法第七十三条第四項中「第六十七条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三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投資法人法第九十条の二第一項第二号」と、同法第七十四条第四項及び第七十六条第二項中「第六十八条第三項」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三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投資法人法第九十一条第二項」と、同法第八十条中「第六	835조제1항, 제836조제1항 및 제3항, 제837조, 제838조, 제846조, 제937조제1항9(제1호의 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투자법인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1조제1항 중 “2개월 전까지 해당일을 공고하고 해당일의 2주간”은 “2주간”으로, 같은 법 제68조제5항 중 “제27조제5호 또는 제59조제3항제1호”는 “「투자법인법」 제67조제1항제16호 또는 제71조제4항제1호”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은 “「투자법인법」 제7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투자법인법」 제9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3조제4항 중 “제67조제1항제2호”는 “「투자법인법」 제7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투자법인법」 제90조의2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74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 중 “제68조제3항”은 “「투자법인법」 제7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투자법인법」 제91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80조 중 “제67조 및 제68조”는 “「투자법인법」 제7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투자법인법」 제90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4항 중 “재판소”는 “내각총리대신”으로, 같

十七条及び第六十八条」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三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投資法人法第九十条の二第一項及び第九十一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と、同法第八十一条第四項及び第八十二条第四項中「裁判所」とあるのは「内閣総理大臣」と、同法第九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設立時取締役」とあるのは「設立時執行役員及び設立時監督役員」と、同条第二項中「前項」とあり、及び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投資法人法第七十三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 중 “설립시 이사”는 “설립시 집행임원 및 설립시 감독임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은 “「투자법인법」 제73조제1항”으로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十四条（投資法人の成立） 投資法人は、設立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つて成立する。	**제74조**(투자법인의 성립) 투자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七十五条（会社法の準用等） 会社法第五十三条から第五十六条までの規定は、投資法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２　投資法人の成立の時に設立時募集投資口のうち引受けのない部分があるときは、設立企画人、設立時執行役員及び設立時監督役員は、共同して、当該部分について引き受けたものとみな	**제75조**(회사법의 준용 등) ① 「회사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는 투자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투자법인의 성립시에 설립시 모집투자구 중 인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설립기획인, 설립시 집행임원 및 설립시 감독임원은 공동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본다.

す。投資法人の成立後に投資口の引受人の設立時募集投資口の引受けに係る意思表示が取り消されたときも、同様とする。	투자법인의 성립 후에 투자구 인수인의 설립시 모집투자구의 인수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취소된 때에도 같다.
３　投資法人の成立の時に設立時募集投資口のうち第七十一条第十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がされていないものがあるときは、設立企画人、設立時執行役員及び設立時監督役員は、連帯して、当該払込みがされていない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③ 투자법인의 성립시에 설립시 모집투자구 중 제71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설립기획인, 설립시 집행임원 및 설립시 감독임원은 연대하여 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액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４　第七十条の二第一項の募集の広告その他当該募集に関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自己の氏名又は名称及び投資法人の設立を賛助する旨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承諾した者（設立企画人を除く。）は、設立企画人とみなして、前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	④ 제7조의2제1항의 모집 광고, 그 밖에 해당 모집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투자법인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내용의 기재 또는 기록을 승낙한 자(설립기획인을 제외한다)는 설립기획인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５　会社法第百二条（第三項及び第四項を除く。）の規定は、設立時募集投資口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⑤ 「회사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는 설립시 모집투자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６　会社法第八百二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二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八百三十四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八百三十五条第一項、第八百三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項、	⑥ 「회사법」 제828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34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35조제1항, 제836조제1항 및 제3항, 제837

第八百三十七条から第八百三十九条まで、第八百四十六条並びに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イ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投資法人の設立の無効の訴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7 会社法第七編第二章第二節（第八百四十七条第二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八百四十九条第二項、第三項第二号及び第三号並びに第六項から第十一項まで、第八百五十一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項並びに第八百五十三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を除く。）の規定は、設立企画人、設立時執行役員又は設立時監督役員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조부터 제839조까지, 제846조, 제937조제1항(제1호의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투자법인의 설립 무효의 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⑦ 「회사법」 제7편제2장제2절(제847조제2항, 제847조의2, 제847조의3, 제849조제2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제85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8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은 설립기획인, 설립시 집행임원 또는 설립시 감독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